

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[별표 3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등급별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해의 직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.
- 마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 기준

등급	연간 매출액(단위: 백만원)	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(단위: 만원)
1	20 이하	5
2	20 초과 50 이하	8
3	50 초과 100 이하	10
4	100 초과 150 이하	13
5	150 초과 200 이하	16
6	200 초과 250 이하	23
7	250 초과	27